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37)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기본공제 대상 확대 (김승수의원안, 조인철의원안)	3
2.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등 연령 상한 상향규정(윤준병의원안, 조인철의원안, 김주영의원안)	8

I. 개요

1.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3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5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기본공제 대상 확대 (김승수 의원안, 조인철의원안)

현 행	김승수의원안	조인철의원안
☐ 기본공제(제50조)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150만원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기본공제 소득기준 상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총 급여액 8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8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200만원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200만원 이하(총 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200만원 이하(총 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김승수의원안 2024. 11. 21. 제출(의안번호 5709), 조인철의원안 2025. 1. 23. 제출(의안번호 7737)

☐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인당 연 150만원으로 책정된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김승수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현행과 같이 150만원으로 하되 그 대상 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이고(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5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500만원→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 포함),

조인철 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 소득금액 기준 또한 상향하려는 것임.(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2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700만원→ 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 포함)

-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를 둠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취지로 하는 제도임.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포함)인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개정안은 물가 상승, 저출생 문제 심화, 경기침체기 근로소득자 가처분소득 증가 필요성 등에 따라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급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과 더불어 인당 기본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현행 기본공제 금액 및 기준이 설정된 2009년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상승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09년 대비 2023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이 33%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고,

기본 공제의 기준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기준(100만원)은 1994년 소득세법 전부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금액 수준이며, 총급여액 기준은 2015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9년 이후 누적물가상승률이 33%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기본 공제액 및 소득기준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실질조세부담률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및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상향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질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83.9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기본공제액 상향은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을 높여 소득세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하에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욱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 비율은 2023년 기준 33%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액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면세자가 다시 증가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의 원칙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단위: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중	46.8	43.6	41.0	38.9	36.8	37.2	35.3	33.6	33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또한, 기본공제액의 경우 모든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데,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 하에서 기본공제액의 상향의 효과가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수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 기준으로 인적공제 공제 적용 대상자는 2,078만 9,197명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은 57조 1,035억 7,5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과 같이 인적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수반될 것임.

또한, 2023년도 약 56조 4,000억원, 2024년 약 30조 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종합소득·근로소득 관련 기본공제 적용인원 및 금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	금액
종합소득	11,475,485	26,977,166
근로소득	20,789,197	49,317,645

자료: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국세통계연보(3-1-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국세통계연보(4-2-2), 국세통계포털(TASIS)

2.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등 연령 상한 상향규정(윤준병의원안, 조인철의원안, 김주영의원안)

현행	조인철의원안	윤준병·김주영의원안
☐ 기본공제(제50조)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150만원 - 해당 거주자 - 소득금액 <u>100만원</u> 이하 (총급여액 <u>500만원</u>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 소득금액 <u>100만원</u> 이하 (총급여액 <u>500만원</u> 이하)인 다음의 부양가족 • 60세 이상 직계존속 • <u>20세</u>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u>20세</u>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 <u>20세</u>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 • 위탁아동	☐ <u>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등 연령상한 상향 규정</u>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u>200만원</u> - (현행과 같음) - 소득금액 <u>200만원</u> 이하 (총급여액 <u>700만원</u>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 소득금액 <u>200만원</u> 이하 (총급여액 <u>700만원</u> 이하)인 다음의 부양가족 • (현행과 같음) • <u>24세</u>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u>24세</u>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 <u>24세</u>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상한 상향 규정</u>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다음의 부양가족 • (현행과 같음) • <u>23세(김주영의원안), 25세(윤준병의원안)이하</u>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u>23세(김주영의원안), 25세(윤준병의원안)</u>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윤준병의원안 2024. 12. 31. 제출(의안번호7140), 조인철의원안 2025. 1. 23. 제출(의안번호 7737), 김주영의원안 2025. 1. 23. 제출(의안번호 7774)

☐ 3건의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이하 “직계비속”) 등의 연령상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인철의원안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상한을 현행 20세에서 24세로,

김주영의원안은 직계비속의 연령 상한을 20세에서 23세로,

윤준병의원안은 직계비속의 연령 상한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

□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현행법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인 자로,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75년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민법」상 성년 기준인 20세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성년의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으나¹⁾ 「소득세법」상 20세 기준은 약 5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²⁾.

1)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12.24., 전부개정]」

제65조(부양가족공제) ①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6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부양가족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개정안은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 지연됨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공제요건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첫째, 인적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인적 공제제도는 납세의무자 본인 및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둌으로써 응능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취지로 하는 제도임.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고 취업 전 공백 기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자격증 취득, 해외유학, 대외활동 등 각종 경험 및 활동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2000년대에는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중 57% 이상이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였으나, 최근 4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48.5%로 감소하는 등 절반 이상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20세~2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인구	3,182	3,139	2,592	3,039	2,877	2,827	2,732	2,629

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은 3인 이내에 한한다.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 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활동인구	1,842	1,800	1,269	1,567	1,323	1,331	1,352	1,276
비경제활동인구	1,340	1,341	1,324	1,472	1,553	1,496	1,380	1,353
취업자수	1,659	1,623	1,149	1,402	1,181	1,219	1,255	1,202
실업자수	183	177	118	165	142	113	97	74
경제활동참가율	57.9%	57.3%	49.0%	51.6%	46.0%	47.1%	49.5%	48.5%
고용률	52.1%	51.7%	44.3%	46.1%	41.0%	43.1%	45.9%	45.7%
실업률	9.9%	9.8%	9.3%	10.5%	10.7%	8.5%	7.2%	5.8%

주: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총인구, 고용률=취업자수/해당 연령대 인구,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에 개정안과 같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 상한을 상향하는 경우 교육 기간의 연장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입법 및 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고, 동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경우 청년들의 교육 기간동안의 가계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다른 기준 없이 공제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으로서 소득을 창출하는 청년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2023년 20~2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5%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동 규정에 따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제활동 의사는 있고, 구직활동을 행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들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등으로 구직의사가 반감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3년 기준 33%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세제 혜택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학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청년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구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어 그 혜택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성년인 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상한을 확대하는 것은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

는 측면이 있음. 주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이에 직계비속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17세 이하⁴⁾, 영국의 경우 16세 이하이되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20세까지⁵⁾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을 상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자녀세액공제 제도가 납세 의무자 본인 및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종합소득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적정 연령대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경제 역동성 증대 및 동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셋째, 개정안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요건을 상향할 경우 연계된 다른 공제대상 역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이에 대한 적절성 및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기준 연령을 상향할 경우 자녀세액공제⁷⁾ 및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⁸⁾ 등의 적용대상이 확

4) The child tax credit benefits eligible parents,
<https://www.irs.gov/newsroom/the-child-tax-credit-benefits-eligible-parents>

5) Child Tax Credit when your child reaches 16
<https://www.gov.uk/child-tax-credit-when-child-reaches-16>

6)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국토연구원, 2020

7)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대되어 상당한 규모의 세수손실이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2,997억원의 세수감이, 조인철의원안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확대와 별도로 2023년 기준 자녀세액공제에서 2,510억원의 세수감이, 김주영의원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2,022억원의 세수감이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3년 기준-윤준병의원안)]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2,892	-1,288	-4,181
종합소득세	-1,897	-1,709	-3,606
합계	-4,790	-2,997	-7,787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3년 기준-조인철의원안)]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22,247	-1,061	-23,307
종합소득세	-12,988	-1,450	-14,437
합계	-35,234	-2,510	-37,745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8)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3년 기준-김주영의원안)]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2,034	-889	-2,923
종합소득세	-1,208	-1,133	-2,341
합계	-3,243	-2,022	-5,26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의 취지가 직계비속의 특수성이 아닌 사회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시기 지연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윤준병·김주영의원안의 경우 조인철의원안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형제·자매의 연령요건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현행법은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기본공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한 부양가족으로서의 본질은 직계비속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현행 20세 이하에서 23세 이하로 함께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